
2025. 3. 5.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2025. 1.



일 래 두 기

- ◆ 이 사례집은 2025. 3. 5.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조합장선거 등 각종 위탁선거 시 자주 발생한 사례 중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이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 사례집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 '(예비)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 지정하는 1명' ⇒ '(예비)후보자등'으로 표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법’ 또는 ‘위탁선거법’으로 표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규칙’으로 표기
- ‘제33조제1항’ ⇒ ‘제33조제1항’ 또는 ‘§33①’로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회’로 표기
- ‘새마을금고’ ⇒ ‘금고’로 표기
- ‘새마을금고이사장’ ⇒ ‘이사장’으로 표기
- ‘새마을금고회원’ ⇒ ‘회원’으로 표기
- ‘새마을금고법’ ⇒ ‘금고법’으로 표기

목 차

제1장 선거운동

I. 선거운동 개괄	7
I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4
III.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6
1. 선거공보	17
2. 선거벽보	20
3. 어깨띠·윗옷·소품	22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4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9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31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34
8.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35

제2장 금지 · 제한사례

I.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37
1. 기부행위 금지·제한	37
2. 현직 이사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47
3. 현직 이사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49
4. 선거일 후 담례금지	51
II. 매수 및 이해유도	52
III.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56
IV.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62
V. 호별방문	66
VI.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69

제3장 위탁선거범죄조사권, 과태료, 포상금 등

1. 위탁선거범죄조사권	72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74
3. 신고자 포상금 지급	76
4. 자수자에 대한 특례	78
5. 신고자 등의 보호	78

[부 롤]

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사무일정	80
II.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81

제1장

선 거 운 동

I. 선거운동 개괄

I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III.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I

선거운동 개괄

① 법규요약(법 §23·§24·§24의2·§24의3)

1. 선거운동 정의(법 §23)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법 §24·§24의2·§24의3)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준비속 또는 해당 위탁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함.]
※ 이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후보자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예비후보자등'이라 함.
-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함.]
※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 유의

3. 선거운동기간(법 §24)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5. 2. 20. ~ 3. 4.)
- 예외
 -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행위(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한함.)
 - 예비후보자등이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법 제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벌 칙 : 제1장Ⅱ·Ⅲ의 선거운동 주체·방법·기간등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후보자·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 ‘선거운동’의 상대방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

Tip**<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 선임신고 등>**

-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을 지정·선임·해임·교체한 경우 자체 없이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에게 1일 6만원 이내의 수당과 아래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만5천원	실비 (상한액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 7만원)	2만5천원

- ※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 선거운동원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이사장이 연말연시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소속 회원들에게 금고 또는 개인의 경비로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이하 현수막의 경우에서 같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다수의 회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이 경우 허위 학·경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인이 포함된 지인들이 참석하는 퇴임식 행사를 개최하거나, 본인 또는 참석한 지인이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퇴임사나 축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등이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해당 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정책발표 가능
- 후보자 명의 또는 기호를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투표독려용 ARS메시지(음성)를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연말연시 · 명절 · 국경일 또는 재난 · 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 없이 또는 계속적 · 반복적으로 회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포함)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이사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금고 대의원이 운영하는 식당과 집에 찾아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잘 부탁 드립니다.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545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현직 조합장에게 불리하도록 조합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 총 49명에게 전송(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757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지지 부탁(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노인정, 마을회관, 도로 위에서 “남편이 농협 선거에 나온다. 밀어달라.”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총 19회에 걸쳐 선거운동(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단2760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문구와 학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조합원 1,745명에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배부(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1263 판결)
- 현직 조합장이 이사로 하여금 18명의 대의원들을 커피숍으로 모이게 한 후 조합장에 대한 출마 권유 유도 및 지지 호소(대법원 2020. 4. 24. 선고 2020도3070 판결)
- 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축협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형이 이번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말하며 총45회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7. 10. 선고 2015고약699 약식명령)
 - ⇒ 후보자의 동생이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의 지인이 네이버블로그에 A의 선거 관련 인터뷰 기사를 1회 링크하고 기사 주소를 게재하였고, 선거기간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의 선거공보 이미지 파일을 조합원에게 2회 발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3166 판결)
 - ⇒ 그 지인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 조합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우리 농협은 현 조합장을 하루빨리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조합원들께서 해결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조합원 약 6,270명에게 우편 발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약2495 약식명령)
- 선거일에 조합원이 투표소 입구에서 성명불상자 및 다른 조합원에게 ‘기호 2번에 투표해 달라’는 의미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 ‘V’자를 4회 만들어 보이고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성명불상 지인을 향해 ‘V’자를 1회 만들어 보이며 선거운동(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8. 22. 선고 2023고합36 판결)
-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의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모형과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 주라고 지시(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Tip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선거인들 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며, 선거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비해 불법적인 행태의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선거인들은 대부분 임원 선거의 후보자들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 친구, 선·후배 관계인 경우가 많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선거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임원 선거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후보자들의 능력, 인품, 공약이 아니라 인맥이나 경제력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형식적인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현법재판소 2018. 2. 22. 2016현바364 결정).

I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출방법별 선거운동방법 』

구 분	직선	총회	대의원회	비 고 (주체)
전화 및 문자 (법 §24의2⑦1)	○	○	○	예비후보자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정보통신망 (법 §24의2⑦1)	○	○	○	예비후보자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명함배부 (법 §24의2⑦2)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	○	○	×	예비후보자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공개행사 정책발표 (법 §24의2⑦3)	○	○	○	예비후보자

① 법규요약(법 §24의2 · §24의3 · §28 · §29 · §30 · §30의4)

1. 주체 : 예비후보자등

2. 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 2025. 1. 21.

3.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됨.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금고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는 제외)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도 가능

Tip

명함 배부 뿐만 아니라 지지 호소도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장소에서 회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위반

※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제한된 범위의 일정한 장소 외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 해당 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예비후보자만 가능, 선거운동원은 불가)

※ **후보자등록을 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선거기간개시일 2025. 2. 20.).**

※ 사례별 예시는 “III.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4·5·6·8” 참조

III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출방법별 선거운동방법 』

구 분	직선	총회	대의원회	비 고 (주체)
선거공보 (법 §25, 규칙 §12)	○	○	○	후보자
선거벽보 (법 §26, 규칙 §13)	○	○	×	후보자
어깨띠 · 윗옷 · 소품 (법 §27)	○	○	×	후보자등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전화 및 문자 (법 §28)	○	○	○	후보자등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정보통신망 (법 §29)	○	○	○	후보자등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명함 (법 §30, 규칙 §15)	○	○	×	후보자등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선거일 소견발표 (법 §30의2, 규칙 §15의2)	×	○	○	후보자
공개행사 정책발표 (법 §30의4 규칙 §15의7)	○	○	○	후보자

1. 선거공보

① 법규요약(법 §25, 규칙 §12)

○ 작성·제출자 : 후보자

○ 규격·종수 등

-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종수·면수 : 1종, 8면 이내

○ 게재내용

-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성명
- 둘째면에 범죄경력(범죄경력회보서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
 - ※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음.

○ 제출 및 발송시기

- 제출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2025. 2. 22.)까지
 - ⇒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하지 않음.
- 발송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2025. 2. 25.)까지

○ 경력 등 이의제기

-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범죄경력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Tip

범죄경력 미제출시 등록무효가 될 수 있음에 유의!

-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법 §19①③.]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 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 졸업한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활호안에 병기하여 기재하는 행위
-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그림’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이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 범죄경력회보서상 범죄경력을 축소·누락·허위 기재하는 행위
-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가지고 다니며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하는 행위
- 선거공보의 종수·수량·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 '○○대학교 ○○대학원 고급정책개발전공 6개월 과정'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 ○○대학원 수료'라고 게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382 판결)
-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 게재(전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808 판결)
-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로마트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제2면 '조합장 임기성과'란에 '하나로마트 ○○지점 개설'이라는 허위사실 게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662 판결)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 게재(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88 판결)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서울고등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2832 판결)

2. 선거벽보

① 법규요약(법 §26, 규칙 §13)

- 작성·제출자 : 후보자(금고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시장선거의 후보자는 제외)
- 규격 : 길이 53cm 너비 38cm
- 작성방법 :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작성
- 종수 : 1종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음.
- 제출시기 등
 - 제출시기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2025. 2. 22.)까지
 -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첨부하지 않음.
 - 첨부시기 : 제출마감일후 2일(2025. 2. 24.)까지
 - 첨부 :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에 첨부
- 경력 등 이의제기
 -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벽보의 내용중 경력·학력·학위·상별·범죄경력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 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졸업한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안에 병기하여 기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벽보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에 신축했던 건물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허위사실에 이르지 않을 경우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기재’는 가능)
- 후보자가 다수의 선거인이 왕래하는 식당 등의 내부에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첨부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3. 어깨띠·윗옷·소품

① 법규요약(법 §27)

- 주체 : 후보자등, 활동보조인(금고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은 제외)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25. 2. 20. ~ 3. 4.)
- 방법 :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 종류 및 규격 : 제한없음(다만, ‘소품’은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여야 함)

Tip

<착용의 의미>

-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로, ‘착용’은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등이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윗옷·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후보자등이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후보자등이 선거벽보와 동일하게 제작한 피켓 등을 제작하여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등이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에 자신을 선전하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동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등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녹음·녹화기, 확성장치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법규요약(법 §24의2⑦1·§28)

- 주체 : 후보자등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25. 2. 20. ~ 3. 4.)
※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등도 가능
-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Tip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비교>

구 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
전송범위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불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금지시간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제한없음
방법	자동동보통신 이용 전송 가능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통신사의 문자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를 표출하는 행위
⇒ 문자 외에 사진 등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
- (예비)후보자등이 (예비)후보자의 홍보 및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회원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하는 행위
⇒ 녹음된 음성에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밝히는 것을 넘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 (예비)후보자등이 회원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예비)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로 공약을 전달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위반
- (예비)후보자등이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형태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언론기사의 URL주소, 선거운동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자신의 SNS 주소(URL)를 게재하여 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등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 후보자가 10명의 인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고, 피교사자들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599 판결)
- 후보자가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 대량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함사진과 함께 조합원 2,200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71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곧 있을 조합장선거에 나가려고 하니 잘부탁한다.”, “경쟁 후보가 안 나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선거운동(울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78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1,444명에게 “○○농협이사 ○○○입니다. 12월 31일자로 이사직을 퇴임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3월 11일, 큰 뜻을 가지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귀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9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능

-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185명에게 전화하여 “○○○후보자의 집입니다. 도와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지지 호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464 판결)
 - ⇒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부친이 조합원 108명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축협 조합장선거에 나오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 호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7. 3. 선고 2015고약1658 약식명령)
 - ⇒ 부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11촌 관계인 자가 조합원 21명에게 “제목 ○○ 문중대표, 전○○문중대표, 전 조합장A. 내년도 조합장 후보 뜻 밝혔습니다. 주위 농민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분들은 하나같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 전송(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94 판결)
 - ⇒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Tip

<휴대전화 가상번호>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련 금지행위

① 후보자

- ⓐ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법 제28조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않는 행위

② 위탁단체

- ⓐ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

- ⓐ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 벌칙 : ①·②·③ⓐ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법규요약(법 §24의2⑦1·§29)

○ 주체 : 후보자등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25. 2. 20. ~ 3. 4.)

※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등도 가능

○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예비)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직접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로 회원들에게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메시지를 선거인 다수에게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이 아닌 제3자가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최초 작성한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리트윗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 비상임이사인 조합원 2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호소하는 글 게시(제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약 5070 약식명령)
- 조합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300회에 걸쳐 후보자의 비리 의혹과 검찰수사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대전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약9114 약식명령)
 - ⇒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으로 지정되어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법규요약(법 §24의2⑦2·§30, 규칙 §15)

○ 주체 : 후보자등, 활동보조인(금고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은 제외)

○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25. 2. 20. ~ 3. 4.)

*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등 및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도 가능

○ 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방법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예비후보자등 및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

○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Tip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비교>

구분	예비후보자등	후보자등
방법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는 제외)	
장소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금지장소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의 장소	○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옥내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등이 선거운동기간에 마트, 시장, 짐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호별방문에는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후보자등이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명함에 일반인(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명함에 (예비)후보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그림을 게재하는 행위
-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 및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 및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위탁단체 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 ⇒ 단, (예비)후보자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
- (예비)후보자등 및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연속적으로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명함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명함을 경로당, 식당, 이·미용실 등에 비치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이 포함된 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자 132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명함 수십장을 직접 주면서 지지 호소(제주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고정560 판결)
 - ⇒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등에게 허용된 방법 (위탁단체가 사전공개한 행사장에서의 명함배부 또는 지지호소)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 호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 ⇒ 단, (예비)후보자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
- 명함을 호별투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법규요약(법 §30의2, 규칙 §15의2)

- 대상선거 : 금고법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외)
- 시기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 장소 :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투표소등'이라 함)
- 방법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투표관리관등'이라 함)이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 소개
※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후보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을 말함)을 소개
 - 후보자는 10분의 범위에서 금고 운영에 대한 소견발표
- 제한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등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투표관리관등은 후보자가 허위사실·비방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불응시 소견발표 중지 등 필요 조치
 - 투표관리관등은 소견발표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불응시 투표소 등 밖으로 퇴장 조치
※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
 -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첨부 불가

8.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법규요약(법 §24의2⑦3·§30의4, 규칙 §15의7)

- 주 체 : 예비후보자, 후보자
- 장 소 :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
- 방 법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 발표 가능
 -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해당 위탁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
- ※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변경된 사항 공고
 -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공개행사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신고
 - 위탁단체는 정책발표 순서, 시간 배분, 진행 방법 등을 모든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공평하게 결정

제2장

금지 · 제한사례

-
- I. 금품 · 음식물 등 기부행위
 - II. 매수 및 이해유도
 - III.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 IV.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V. 호별방문
 - VI.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



1. 기부행위 금지·제한

① 법규요약(법 §32·§33·§34·§35)

가. 기부행위의 개념(법 §32)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이하 같음)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Tip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 어떠한 행위가 기부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위 규정에서 정해진 자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후보자가 ‘매년 (연봉)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발송한 행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019 판결).

나. 기부행위 제한기간(금고법 §22의2⑥, 법 §34·§35⑤·부칙<2023. 8. 8.>§2)

○ 이사장 ⇌ 재임중

○ 이사장이 아닌 기부행위 금지 주체

⇒ 위탁신청일*(2024. 9. 21.)부터 선거일(2025. 3. 5.)까지

*제1회 이사장선거시에만 적용

다.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주체	제한기간	제한내용	조문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이사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로 봄.	§35②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35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35④
이사장	재임 중	이사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⑤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라.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함.)
- 금고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금고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시 주의사항(법 §33②)

-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됨.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의례적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이하 같음)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그 밖의 경조사는 제외함)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호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담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 (물품의 제공을 포함함)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돋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2] 사례 예시

가. 직무상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금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금고 명의로 회원복지·법률상담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금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금고의 명의로 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금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금고 명의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회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금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금고 명의로 회원 자녀 학자금·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금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통상적 범위의 다과·음식물 또는 담례품을 금고 명의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금고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고 명의로 화환·화분이나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금고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회원에게 금고 명의로 위로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금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회원들에게 이사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이사장 명의**의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금고가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면서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 변경하는 경우
- 금고가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회원 복지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사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 하는 행위
- 금고가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에 사무실·사무 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의례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43쪽에서 같음) 또는 이사장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금액 제한 없음)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이사장이 친족 또는 회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후보자가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3만원 이내) 및 답례품(1만원 이내)을 함께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 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는 행위~~
-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개최하는 본인의 퇴임식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3] 주요 위반행위 판례

가. 직무상 행위 중 기부행위로 본 사례

- 조합장이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A조합 □□□'(성명 기재) 명의로 된 봉투에 A조합의 경비로 마련된 축의금 5만원을 넣어 제공(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약664 약식명령)
-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 제공(대구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단855 판결)
-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 제공(춘천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고단463 판결)

나. 의례적 행위 중 기부행위로 본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축제 추진위원회(위원 14명 중 위원장 포함 8명이 선거인) 위원장으로부터 축제 후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축제 추진위원회 간사 명의의 계좌로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 송금(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14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A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조합원 22명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 한 상자(25개)를 제공하고, 조합원 7명과 그 외 회원들이 참석한 B산악회 모임에서 조합원 7명에게 1,000원 상당의 배 한 개씩 제공(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476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좋은 것이니 꼭 잡수라”는 말을 하며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 제공(광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3466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마트를 운영하는 사위와 공모하여 마트 직원 명의로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84명에게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사과 85박스(개당 34,800원) 제공 및 A 단독으로 조합원 7명에게 합계 157,000원 상당의 사과, 배 배송(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94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장어정식과 음료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조합원에게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노3487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7명에게 각각 축의금으로 10만원 제공(대구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노4340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의사결정 기구의 상당수가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등 3곳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현금 명목으로 각 5만원씩(총 15만원)을 현금함에 넣음으로써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444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쉬라.”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조합원의 손녀에게 “할아버지 세뱃돈이다.”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8. 11. 선고 2015고단312, 520 병합 판결)
-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청주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고단1746 판결)
-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 선고 2008고단96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구(선거인)가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들과 함께 2차례 식사를 하면서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후보로서의 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한 후 전체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선거인 4명에게 7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2110 판결)
- 조합원이 식당에 조합원 8명을 초대하여 “○○면과 △△면은 뜰뜰 뭉쳐야 군의원이든 조합장이든 우리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 나는 ○○○을 찍어줄 것이다.”라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총 204,000원 상당의 닭볶음탕과 주류 등 제공(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350 판결)

2. 현직 이사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① 법규요약(법 §35⑤)

- 주체 : 이사장
- 제한기간 : 재임 중
- 제한내용 : 법 §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조합장이 마을회관에서 조합원 2명 및 불상의 마을 주민 약 10명과 술자리를 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시가 9,480원 상당의 육회를 제공하고, 이어서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조합원 3명에게 시가 46,125원 상당의 육회를 제공(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1. 선고 2023고약1904 약식명령)
- 조합장이 임의로 선정한 조합원 29명에게 배 선물세트(39,000원 상당)를 제공하고, 비공식적으로 전직 조합장들을 소집하여 참석한 사람에게 과일박스 등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음료수 선물을 전달하는 등 조합장 재임기간 중 조합원 33명에게 129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 공모하여 설 명절을 계기로 조합원 2명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을 제공(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707 판결)

- 조합장이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향우회 단합회에 참석하여 2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번영회 하계총회에 참석하여 합계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0개 제공(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1704 판결)
- 조합장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1등 농협을 이룬 큰 일꾼 ○○농업협동조합장 △△△’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된 ‘1만원 상당의 쌀’을 농협 직원 5명으로 하여금 조합원(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77명에게 제공(시가 총 770,000원 상당)(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 3283 판결)
-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형님, 손자들 세뱃돈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조합장실 책상 서랍에서 20만원(5만원권 4매)을 꺼내어 제공(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296 판결)
- 조합장이 농협 조합원 180명에게 ‘○○농협 △△△’이라고 표시한 멀치세트 1박스(시가 17,500원 상당)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합계 3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전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단830 판결)
- 조합장이 관내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게이트볼 모임에 개인의 경비로 43만원 상당의 철제 난로 제공(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7. 10. 선고 2015고단403 판결)

3. 현직 이사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① 법규요약(법 §36)

○ 주체 : 이사장

○ 제한기간 : 재임 중

○ 제한내용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금고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 제공방법 구분>

경비주체	제공명의	기재사항	유의사항
금고	금고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함.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이사장 (개인)	이사장	-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경우 관혼상제 의식에만 5만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함.

②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조합장이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 참석(2건) 및 조합원 병문안(1건) 시 '□□조합장 ○○○(성명)' 명의로 된 봉투에 조합의 경비로 마련한 축의금 및 위로금 각 5만원(3건, 합계 15만원)을 넣어 제공(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15. 선고 2023고약664 약식명령)
- 조합장이 총 360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장례식에 시가 14,000원 상당의 근조 조향세트를 조합 경비로 제공하면서 '○○조합 조합장 △△△'라고 기재하여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 8. 20. 선고 2019노1649 판결)
- 조합장이 조합원 아들의 결혼식에 'A농협 조합장 B 배상'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조합의 경비로 성명과 직명을 밝혀 조합원 총 35명에게 합계 350만원의 축·부의금 제공 (대구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2868 판결)
- 조합장이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총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을 기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5고단308 판결)
- 조합장이 조합원의 장인상에 참석하여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만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농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총 35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근조 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그 화환 비용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함(제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987 판결).

4. 선거일 후 답례금지

① 법규요약(법 §37)

- 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금지내용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
- 당선인 또는 낙선인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신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답례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인이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당선 인사를 하고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II

매수 및 이해유도

① 법규요약(법 §58)

○ 주체 :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 각 목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위 각 목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제공의 의사표시’, ‘제공의 약속’의 의미

‘제공의 의사표시’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 ‘제공의 약속’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에 기수가 됨. 제공의 약속은 행위자의 제공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제공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 성립함(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바26 결정).

•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의 의미

구분이라 함은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403 판결).

②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이사장이 ①대의원 A에게 “내가 노래교실 송년회 현찰로 보태줄게”, “얘기하지 말고 써”라고 전화하고, 금고 지점장을 통해 A에게 현금 10만원 제공, ②대의원 A·B·C에게 “내가 이사장선거에 걱정 있는 거지 뭐” 등으로 말한 다음 황태구이 등 36,000원 상당의 향응 제공, ③대의원 D·E에게 식사 중 “내가 이사장에 두 번째 출마하니까 나를 뽑아 달라”고 말하면서 소고기 등 91,2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귀가 중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0장씩 제공(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11460 판결)
- 이사장이 금고 임원에게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고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는 등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3. 16. 선고 2016고단152 판결)
- 이사장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와 금고 전무인 B는 공모하여 이사 출마자 8명을 모이게 한 후 대의원명부를 나누어주면서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서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술과 LA갈비 등 시가 3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A는 대의원 N과 공모하여 이사 출마자 8명을 모이게 하여 “A이사장을 중심으로 다같이 잘해보자. 선거는 전쟁이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된다”라고 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와 조합원 B가 공모하여 B는 조합원 C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A는 C에게 “조합장선거 때 잘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원 권 6매, 합계 3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에 걸쳐 조합원 총 18명에게 합계 570만원의 현금 제공(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210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에게 “나는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너는 이사로 당선되자”고 하면서 양주 1병, 와인 1명, 화분 1개와 새마을금고 대의원명부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5재고정1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의 처를 통해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인 5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제공하고, 21명의 선거인에게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음료수 30박스 제공(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20280 판결)
- 이사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가 갑, 을과의 후보단일화논의가 진척이 없자 금고 부이사장 B에게 갑, 을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그 동안의 선거비용 등을 보전해 주자고 제의하고 B가 동조하여, A는 B에게 “갑, 을에게 하나씩 전해줘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주고, B는 이를 갑, 을에게 각각 전달(대구지방법원 2013. 1. 18. 2012노3233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억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136, 225 병합 판결)
- “준비 많이 하셨는데 도와주세요.”, “예우에 맞게 시 □□□ 부회장하시는 결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얘기가 다 된 상태니까 선거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등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 제공의사 표시(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고단2277 판결)

III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① 법규요약(법 §61 · §62)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①)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III. ①’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②)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허위의 사실’의 판단기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음.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 ‘공표’의 의미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8.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 (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도193 판결).
-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다. 후보자 등 비방죄(법 §62)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비방’의 의미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 ‘사실의 적시’의 의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 ‘위법성 조각’ 사유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 후보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 없이 자신의 소문에 대한 해명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 ‘○○재단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가.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후보자 A는 선거공보에 B대학교 C대학원 고급정책 개발전공 6개월 과정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1998. 서울 B대학교 C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고,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발송되게함으로써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 학력을 유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382 판결)
- 후보자가 본인이 ○○농협조합장으로 재임하였던 기간인 2018년도의 ○○농협의 출자배당률이 관내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조합원 3,286명에게 “2018년도 3.5%라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 이를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후보자인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219 판결)

-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로마트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제2면 '조합장 임기성과'란에 '하나로마트 ○○지점 개설'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662 판결)

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공약을 상당부분 이행하여 공약이행률이 0%가 아니었고, 전임 조합장 때보다 사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부실 경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 '공약이행률 0%', '전기 이월금은 전임 조합장의 반토막 부실경영' 등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381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자 ○○농협 비상임 감사인 자가 비상임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 기간이 아닌 2018년도 이전의 일들에 대해 현 조합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본인 개인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현 조합장 등 총 78명의 ○○농협 임원들에게 위 감사보고서 50부를 배부하고 이 내용을 전부 읽는 방식으로 발표(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4474 판결)
- 조합장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 위판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의혹, 5. 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익명으로 발송(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노2941 판결)

다. 후보자 등 비방

- A후보자의 도덕성과 농협 경영상 비리, 공사발주시 담합 의혹이 게재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고 진정서에 서명을 받는 등 A후보를 비방(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766 판결)

- 후보 1번이 주먹을 쓰는 사채업자가 아니었음에도, “2번 부탁해요 1번은 사채업자, 주먹쓰는 사람이고,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는데 2~3차례 공금횡령으로 새마을금고 짤림. 아버지가 후보 1번 이래요.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아파트 주민 등 30여명에게 전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1862 판결)
- 후보자 본인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후보가 조합장 재임 중 노조와 충돌이 잦았고 노조와의 분쟁비용으로 조합 경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함으로써 상대 후보를 비방(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719 판결)
- 이사장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비싼 가격에 새마을금고에 매도하였으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50부 가량을 대의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후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대구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노2076 판결)
- “후보자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후보자를 비방(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IV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법규요약(법 §31)

○ 주체 : 금고 임·직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 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금고가 금고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금고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금고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관지 (금고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
- 금고가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금고의 경비로 금고의 운영, 사업수행, 재난·재해 안내·고지 등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이사장의 직명·성명·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게재하여 회원에게 통상적인 내용의 안내장 등 인쇄물 또는 문자메시지·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이사장 명의의 ARS 전화를 하는 행위
⇒ 다만, 금고의 설립 및 활동 목적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안내·고지해오던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시행하거나, 이사장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금고의 임·직원이 그 방법(여론조사기관 의뢰 등)이나 횟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나 적합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금고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금고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이사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금고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금고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이사장이 선거권자인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전·현직 이사장의 직무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③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위탁단체 임원이 위탁단체의 사무실에서 직원 6명을 모이게 한 뒤 “아무래도 ○○○(위탁단체명)와 시장님의 가까워야 ○○○가 잘 돌아 가지 않겠나, 현 시장님의 현 회장을 지지하니 이런 분위기에서 직원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8. 31. 선고 2023고약261 약식명령)
-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2008고약56101 약식명령)

-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의 재직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이와 함께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은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후보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 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사진, 이력, 경영성과, 공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림조합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조합직원에게 ○○산림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도록 지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412 판결)
- ○○농협 총무과장이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를 위하여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2292 판결)

V

호별방문

① 법규요약(법 §38)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2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회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

⇒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정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복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닌 병원의 각 입원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회원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주요 위반행위 판례

- 후보자가 조합원 17명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명함 및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목토시 16개를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381 판결)

-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민원실 미포함)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호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 방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2. 27. 선고 2006고합93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의 주거지 마당에서 “조합의 이사로 있는데 이번에 조합장에 출마하니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총 17 개의 호를 호별방문하고, 조합원의 고추하우스 앞 도로에서 ‘음료 10병들이 1상자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6,775원 상당의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대법원 2020. 9. 25. 선고 2020도8887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의 공모 하에 그 배우자가 조합원 12명의 집을 찾아가 “남편 ○○○이 농협에 나온다, 밀어달라.”, “신랑이 조합장선거에 나온다, 한표 부탁한다.” 등으로 말하며 지지호소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단2760 판결)
-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합원이 선거인 9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기호 ○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며 현금 교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1500 판결)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지지 부탁(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판결)
- 조합장선거 출마·불출마 의사를 번복했던 현직 조합장이 조합 이사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의 모임에 참석한 후 자연스럽게 출마선언을 하기 위하여 선거인 18명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대법원 2020. 4. 24. 선고 2020도3070 판결)

VI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① 법규요약(법 §65)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벌칙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Tip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직위나 직책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만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신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는 성립함(대법원 2008. 9. 10. 선고 2008도8302 판결).

- ‘협박’의 의미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②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조합원이 투표소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기호 몇 번을 뽑을 것인지” 등을 물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제지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직원의 목에 패용하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긴 후 직원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8. 22. 선고 2023고합36 판결)
-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2등분으로 찢어버려 투표용지 2장을 훼손(충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 선고 2012고합71 판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리가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 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대전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431 판결)
-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판결)

제3장

위탁선거범죄조사권, 과태료, 포상금 등

-
1. 위탁선거범죄조사권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3. 신고자 포상금 지급
 4. 자수자에 대한 특례
 5. 신고자 등의 보호
-



1. 위탁선거범죄조사권

① 범규요약(법 §73)

1. 주 체 :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2. 발동요건

-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에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법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조사방법

- 위 2.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위원·직원의 위반혐의가 있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

4. 벌 칙 :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과태료 부과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일시·대상·건수·비용 및 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요구서 등 공문서수령증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 8438 판결).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우수농가 사은품 제공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707 판결)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우편물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불상의 사람이 연하장을 발송한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을 구하여 마치 자신이 발송한 연하장의 영수증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대법원 2021. 2. 2. 선고 2020도17313 판결)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후보자 비방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련 진정서의 조합원 서명 내역 등에 대해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766 판결).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① 법규요약(법 §35③·§68)

1.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 처벌

2.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3. 과태료 면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법 §68③ 단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규칙 §34⑤2.가.)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나.)

4.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규칙 §34⑤1.)

② 과태료 부과사례

- 조합장으로부터 총 151만원 상당의 떡을 제공받은 조합원 및 그 가족 65명(2024. 1. 16.)
 - ⇒ 총 1,596만원(1명당 16만원~67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등 총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2023. 11. 8.)
 - ⇒ 총 338만원(1명당 169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등 총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13명(2023. 10. 30.)
 - ⇒ 총 651만원(1명당 40만원~8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총 93만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받은 조합원 및 그 가족 22명(2023. 10. 27.)
 - ⇒ 총 1,605만원(1명당 45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 조합원으로부터 식사 등 총 29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및 그 가족 44명(2023. 10. 24.)
 - ⇒ 총 1,407만원(1명당 9만원~36만원) 과태료 부과
- 조합원으로부터 식사 등 총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3명(2023. 10. 11.)
 - ⇒ 총 207만원(1명당 69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현금 10만원 및 50만원을 각각 제공받은 조합원 2명(2023. 9. 11.)
 - ⇒ 총 900만원(각 150만원, 750만원) 과태료 부과

3.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법규요약(법 §76)

1. 지급대상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경우만 해당됨.)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2.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지급(규칙 §37①)

② 포상금 지급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자네가 안받으면 나 안 찍어 준다고 생각하겠네.”라는 등의 지지 호소를 하며 현금 총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2019. 1. 28.) ⇒ **포상금 1억원**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2019. 2. 7.) ⇒ **포상금 9,90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방문하여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현금 총 210만원 및 9만원 상당의 두유 6상자를 제공한 행위 신고(2023. 3. 2.) ⇒ **포상금 6,00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외삼촌이 조합원 3명을 호별방문하며 현금 총 25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2023. 3. 3.) \Rightarrow 신고자 2인 포상금 각 5,00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9명을 호별방문하여 총 3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행위 신고(2023. 4. 11.) \Rightarrow 포상금 4,190만원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및 그 가족 26명에게 117만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 신고(2023. 8. 23.)
 \Rightarrow 포상금 2,000만원
- 후보자의 장모가 조합원 10명의 자택 또는 가게를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을 하면서 개인별 30만원씩 현금 총 3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2019. 3. 11.) \Rightarrow 포상금 2,000만
- 농협 감사 및 조합원이 조합원 등 모임참석자 17명에게 277만원 상당의 식사 및 양주 5병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건배사를 통해 “조합장님 참석하셨으니 앞으로 한 번 더 재선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지발언을 한 행위 신고(2019. 3. 4.) \Rightarrow 포상금 2,00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의 자택, 농장 등을 방문하여 조합원 232명에게 238만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행위 신고(2019. 2. 27.) \Rightarrow 포상금 2,00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직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 46명에게 207만원 상당의 사과 44박스 및 굴비 2상자를 제공한 행위 신고(2019. 2. 28.) \Rightarrow 포상금 1,910만원
- 축협 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행위 신고(2023. 4. 3.) \Rightarrow 포상금 1,500만원

4.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74)

1. 적용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58)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법 §59)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2. 자수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

5. 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1.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조치

부 록

-
- 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사무일정
 - II.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24. 9. 1.까지	일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칙§3②
9. 21.	토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	법§8
9. 21.부터 '25. 3. 5.까지	토 수	기부행위제한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회 이사장선거시에만 적용	법§34 법§35 부칙<23. 8. 8.> 제2조
9. 22까지	일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칙§3②
'25. 1. 15.까지	수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법§15④
1. 2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법§24의2①
2. 14.부터 2. 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17.까지	월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새마을금고 정관(예)§39
2. 18.부터 2. 19.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 일간	법§18①
2. 19.부터 2. 21.까지	수 금	선거인명부 열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2. 20.	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 22까지	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 23.	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 2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①
2. 25.까지	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등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 까지	법§25③ 법§43
2. 28.까지	금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3. 3.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 · 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4.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 · 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 5.	수	투·개표	투표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4. 4.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②

II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① 법규요약(법 §68③)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됨.

②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및 양태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 가감기준
1.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앞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위반정도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 할 수 있음. 이 경우 부과금액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미만이거나 50배를 초과 할 수 없음.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